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(2019, 12, 5,)

> 마포로3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(안)

검토보고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
마포로3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(안)

검토보고

의안 번호 19-143

2019. 12. 5. 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도시계획과)

나. 제 출 일 : 2019. 11. 15.

다. 회 부 일 : 2019. 11. 18.

2. 제출이유

재개발사업계획 결정 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공가로 방치된 노후·불량 건축물 지역인 마포로3-1지구의 부도심 업무 및 주거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.

3.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현황 가. 정비사업 개요

1) 위 치 : 마포구 아현동 617-1번지 일대

2) 시행면적 : 4,062.88 m²

3) 용 도 : 공공시설(창업센터) 및 공동주택(199세대)

4) 시 행 자 : ㈜인사이트투

5) 추진경위

- 1979. 09. 21. : 재개발구역 지정 (건설부고시 제345호)

- 1981. 11. 13. :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(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)

- 2005. 05. 04.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고시 (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7호)

- 2019. 05. 08. : 정비구역·정비계획 변경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

- 2019. 05. 23. ~ 2019. 06. 24. : 주민공람·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

- 2019. 08. 14. : 주민설명회 개최

- 2019. 10. 17.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(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3호)

- 2019. 11. 7. ~ 2019. 12. 7. : 주민 재공람·공고

나. 정비구역 및 면적(변경없음)

ユ 申	정비사업 명칭	위치		면 적(㎡)		비고
구분	경비/1월 명경	71 71	기 정	변 경	변경후	비고
기 정	마포로3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마포구 아현동 617-1번지 일대	4,602.88	-	4,602.88	

다.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(변경)

1)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(변경)

구 분	시 설 명	위치	면 적(㎡)	비고
신 규	공공청사 (창업센터)	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17-1번지 일대	연면적 : 4,475.03	복합설치 (서울특별시장)

2)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계획(변경)

구 분	시설의	위치		면적(㎡)		비고
TE	종 류	TIA	기정	변경	변경후	H] <u>JV</u>
	경로당		-	증) 125.00	125.00	
공동 이용 시설	어린이놀이터	획지1	-	증) 155.76	155.76	(199 × 2.5㎡) × 1.25 = 621.88㎡ 이상
	주민공동시설		-	증) 534.32	534.32	

3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분	구 역 구	' 분	가- 획 <i>z</i>	구 또는 이 구분	위 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비고	
一十七	명 칭	면 적 (㎡)	명 칭	면 적 (㎡)	1 1 1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 축	철 거 이 주	비고
계	-	4,602.88	_	4,602.88	-	16	-	-	16	-	
변경	마포로3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4,602.88	획지1	4,602.88	마포구 아현동 617-1번지 일대	16	_	_	16	-	

4) 건축물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분	구 역 구	' 분			· 또는 구분		위치	주 용 도	건폐율	용적률	높이(m) 최고초	申互	1_		
। स	명칭	면적 (㎡)	퍈	칭	면 (n		7 7	丁芳王	(%)	(%)	최고충 수	(연면적	m²)		
변경	마포로3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4,602.88	획	획지1 4		칙지1 4,6		2.88	아현동 617-1번지 일대	공동주택	60 이하	546 이하	70m (23층 이하)	38,692.	.07
				<u></u> 립규	모 및	비율									
				구 분					세대수		비율(%)				
				계				199			0				
	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비	및 율		05 2.151		60 m² 이하			-		-				
				85 m	85 m²이하 60 n		ै ~ 85 m² ०) दे	하	199	199		100.0			
				85㎡ 초과					-			_			
			- 전용면적 85㎡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80% 이상												
심의완화 사항			-				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• 광로3-293(마포대로) 변 : 건축한계선 5m												

5)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시행계획(변경)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교
재개발사업	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 는 날부터 4년 이내	㈜인사이트투	증) 197세대 ※현황 : 2세대 ※변경 : 199세대	

6)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
- 나. 주민공람 : 2019. 5. 23. ~ 2019. 6. 24.(의견 있음)

연번	제출자	공람 의견	주관부서 의견	공람의견심사위원회
1	마제스타 외 5인	토지등소유자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고 동의율이 미충 족함.	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적정하며,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은 하나로서, 동의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는 없음 	불채택
2	심영진 외 2인	정비계획 입안 이전 토지등 소유자에게 사전설명하지 아니하고 제안되었기에 위 법함.	제안자의 토지등소유자 사전설명은 법적 사항 아니며,주민설명회는 관리청 권한임.	불채택

다. 주민설명회 : 2019. 6. 12. 15:00

- 토지 등 소유자(마제스타 외) 불만으로 설명회 의사진행 중단
- ※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미확인된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위법성 주장 토지등소유자의 산정기준 오류 주장

5. 검토의견

가. 입안 배경

본 건은 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.)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(1981.11.31.)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지역으로 사업계획 결정 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공가로 방치된 노후・불량 건축물 지역으로 부도심의 업무 및 주거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제안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

제1항에 따라 동 변경(안)에 대하여 주민 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주요 변경 사항 검토

-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은 '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'에 따라 정비구역내 공공시설 등을 공공에 설치·제공하고 용적률을 완화 받고 서울시 공공청사 창업센터 용도로 기부채납함.
- 공공시설 설치 유지관리 주체와 설치주체가 명확하고 공공이 온전하게
 사용가능함으로 타당함.

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, 어린이놀이터, 주민공동시설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」규정에 따라 총량면적 이상 확보하여 적합함.

다. 종합의견

○ 금번 계획 변경은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후 그동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・불량 건축물 정비 차원으로 바람직해 보이며,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어긋남이 없어 보임.

다만, 주민공람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지등소유자의 이권을 다룬 민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신속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업 주체자와 적극적 중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65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과 같은 법 시행령제54조 손실보상 등의 따라 세입자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을 현실적으로마련해야 할 것임.

[관계법령]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제14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

- ① 토지등소유자(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- 6. 토지등소유자(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. 다만,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- 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,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〉」

제10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

-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, 계획설명서,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.
-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(주민총회를 포함한다)에서 토지등소유자(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)의 <u>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</u>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